

# 심 사 보 고 서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52
----------	-----

2020. 10. 23.(금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
나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제386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0년 10월 1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남진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과학기술기본법(시행령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시행령)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술창업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(안 제1조)
  -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항으로부터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2항으로 개정함.
-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의 근거(안 제2조제2항)

-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제24조의4제4항으로부터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의7제3항으로 개정함.
-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(안 제3조제1항)
  -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4항으로부터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4항으로 개정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# 가. 제출배경

-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이관
- 「과학기술기본법(시행령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시행령)」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

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[2019.8.20. 일부개정 , 시행 2020.2.21]

#### 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조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의4제3항'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2항'으로 변경
- 안 제2조제2항 중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제24조4제4항'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제6조의7제3항'으로 변경
- 안 제3조제1항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6조4제4항'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7제4항'으로 변경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「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”을 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4조의4제4항”을 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충청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4항”을 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계법령

###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#### 제4조의7(기술창업 활성화 등)

-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###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#### 제5조의7(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)

-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